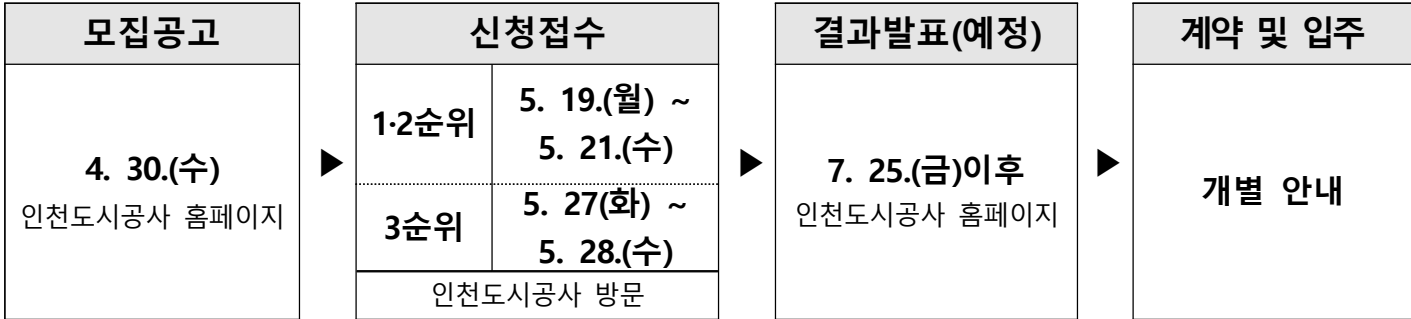


2025년 인천도시공사(iH)
기존주택 매입임대(청년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임대 가능한 주택(공급예정 물량 포함)의 2배수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과정에서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5. 4. 30.(수)

I 공급개요

1. 공급일정



※ 1·2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초과 시, 3순위 신청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2. 모집세대 : 344호
- 3. 공급주택 : 전용면적 50㎡ 이하 규모, 방 2개 이하인 주택
-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수준 (단, 3순위의 경우 임대료 10% 할증)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 재계약 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5. 대상주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중구

- 대상주택 위치 및 임대정보는 첨부 “공급주택목록” 및 “임대주택 지도정보 포털” (<https://landmap.ih.co.kr/HWma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공급물량 차이로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택명	주소	공급호수	모집세대
미추홀구	도화유희주택1차	도화동 558-1외 2필지 (주안로7번길 38)	4	8
	도화대문주택	도화동 558-8,9,10,11 (숙골로8번길 33-3)	1	2
	도화대성지움애1차	도화동 137-1 (석정로 294)	6	12
	송의해드림1차	송의동 42-90,91 (경인로116번길 44)	1	2
	송의대성지움애3차	송의동 87-10 (석정로 130)	16	32
	용현인하아리스타	용현동 286-4 (소성로 16)	10	20
	용현공감주택1차	용현동 70-25 (한나루로501번길 52-1)	2	4
	용현해드림1차A	용현동 424-5 (경인북길 103)	4	8
	용현해드림1차B	용현동 424-7 (경인북길 105)	4	8
	용현해드림2차	용현동 70-23 (한나루로501번길 50-1)	1	2
	용현유희주택2차	용현동 557-3외 1필지 (낙섬중로 94번길 9)	1	2
	주안해드림7차	주안동 543-34 (미추홀대로657번길 49)	2	4
	소 계		52	104
남동구	구월해드림4차	구월동 4-7 (석산로228번길 63)	3	6
	구월단단주택	구월동 1247-45 (석산로240번길10)	1	2
	구월단단주택2차	구월동 1247-77 (석산로240번길 29)	5	10
	구월단단주택3차	구월동 1248-1 (석산로244번길 5)	2	4
	만수푸르미르1차	만수동 895-37,40 (구월말로92번길7)	1	2
	간석대문주택2차	간석동 392-14 (주안로247번길 29)	4	8
	소 계		16	32
서구	검암미가A동	검암동 638-7 (승학로422번길 33-7)	1	2
	마전한그루	마전동 1164-8 (가현로 133번길 6)	1	2
	불로디아이빌 A동	불로동 854 (용해로23-8)	2	4
	불로디아이빌 B동	불로동 854-1 (용해로27-9)	4	8
	오류토성드페리움	오류동 1658-14 (보듬6로 36)	3	6
	미정	석남동 581-12 (석남로 88)	4	8
	소 계		15	30
부평구	청천대성지움애1차	청천동 300-2 (길주로508번길 44)	80	160
	부평세창주택1차	부평동 10-43 (길주남로102번길 11-11)	3	6
	소 계		83	166
계양구	작전나라사랑채	작전동 870-2 (봉오대로 704)	4	8
중구	전동은혜주택1차	전동 33-1 (전동로 13)	2	4
총 계			172	344

1. 신청자격 및 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4. 30.)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유 형	자격요건
①대학생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 입학(편입) 및 복학예정자
②취업준비생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하(졸업유예자 포함)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③청년(일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본 공고의 경우 1985. 5. 1. ~ 2006. 4. 30. 출생자 지원 가능)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제외자: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원격대학교(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생, 재외국민

졸업, 중퇴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대 상	유 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은 공급 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단위: 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4,317,797	6,024,703	7,626,973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 자산 기준

자산기준	내 용
총 자산가액	2순위: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3순위: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가구원수는 각 자격요건에 따른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을 의미함

* 월평균소득은 신청인·신청인의 부모의 세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

*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검증대상에서 제외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선정기준

신청접수 후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입주자 선정 기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2)

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3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

2.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3. 장애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1점

4.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점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

5.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인천도시공사 방문접수로만 가능

구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1·2순위 :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 1층 랜선회의실 - 3순위 : 인천도시공사 신관 1층 주거복지처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2. 신청기간

- 1·2순위 : 2025. 5. 19.(월) ~ 2025. 5. 21.(수)

- 3순위 : 2025. 5. 27.(화) ~ 2025. 5. 28.(수)

※ 1·2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 초과 시 3순위 신청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1·2순위 모집인원 초과 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3.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5. 4. 30.)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인천도시공사)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동의서 내용 확인 후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1,2순위 : 신청자 본인+부모 전원 서명 / 3순위 : 신청자 본인만 서명 - 부모 기준의 경우 첨부된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 모든 동의란 체크 필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3순위 해당)	· 동의서 내용 확인 후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 2순위 : 신청자 본인+부모 전원 정자체 서명 / 3순위 : 신청자 본인만 서명 - 부모 기준의 경우 첨부된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2~3순위 해당)	·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내역 기재 ※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필수 첨부(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자 서명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양식 공고문 첨부)

○ 공통 입주자격 확인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청년 (만19세 이상 또는 만39세 이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대 학생 (만18세 이하 또는 만40세 이상)	· (재 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각서(공고문 첨부)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각서(공고문 첨부)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만18세 이하 또는 만40세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1순위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기타 제출서류 (해당 시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등본 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이혼 시 소득·자산 검증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검증 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첨부된 Q&A(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참조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신청자, 부, 모 모두의 초본 제출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공고문 첨부)
가점부여 관련서류 (해당 시 제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 04. 30.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58 ·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IV 기타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선정 여부는 인천도시공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인천 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 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다만 계약일시 이전 또는 계약일시에 참석하여 순번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마지막번호(344번) 이후 번호로 예비순번을 재부여합니다. 순번연기자가 다수일 경우 기존 예비순번 순서에 따라 순번을 재배정합니다. (예 예비순번 1번 11번 25번이 순번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 1번→345번, 11번→346번, 25번→347번 부여)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개방	·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전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동호배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동호지정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동호지정 장소에 없을 경우 다음 순번자부터 동호지정을 진행하며, 동호지정 장소에 복귀한 시점 진행순번으로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합니다. 동호지정 진행중 본인 계약순번이 지난후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하나 반드시 본인 계약순번 동호지정 진행시간에는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미도착시 불참으로 처리)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해야 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 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 시, 지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 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V	문의처
---	------------

문의전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주거복지사업1팀
-------------	------------------------------------

참고사항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자산항목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금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 지방세정 자료

	및 주택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예수금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신청대상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자격요건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우선 공급 대상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3순위)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1순위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에 신청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인)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평 점
① 수급자 등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3점 3점	()	()점
②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0 , X)	()점
③ 장애 여부	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2점 1점	()	()점
④ 소득수준 (2,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3점	()	()점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로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회)	()점
			총 점	()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출자자]	
	출자금/ 출자비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	원	[차주]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	--

상기 대상자는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4.30.)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다음 학기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근로형태 확인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경우		☐ 단기 또는 임시 고용 ☐ 체험형 인턴 ☐ 채용형 인턴 ☐ 일용직 근로			
근로기간		20 . . . ~ 20 . . .			
근로 계약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 근로시간		☐ 1주 15시간 미만 ☐ 1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신청자가 인천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 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확인자(사용주) : (인)

일 일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